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단1408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5.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62,339,8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62,339,8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C,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5.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74,994,70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37,497,3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원고는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054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1. 20.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123,061,177원 및 그 중 50,258,473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양수금 채권은 2023. 7. 10. 현재 원리금 합계 164,086,228원 및 그 중 50,258,473원에 대하여 202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들과 E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피고 C, D 및 E은 부(父)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모(母) 피고 B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2020. 11. 30. 사망하자, 피고 B이 3/9 지분, 피고 C, D 및 E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 소유의 상속재산이었는데, 망인이 2020. 11. 30. 사망하자, 2021. 5. 2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C, D의 공동소유(각 1/2 지분)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5. 2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5. 24. 피고 C, D의 공유(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해서는 2022. 4. 25. 남동구(인천광역시)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0.자로 경료된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2. 23. 말소되었다.

다. E의 채무초과상태

E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21. 5. 24.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비롯하여 H, 남동세무서에 대한 각종 채무로 합계 72,544,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채무자들을 관리하고 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E을 꾸준히 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상속등기일인 2021. 5. 24. 무렵에는 E이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7. 20.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E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9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E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9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조합, G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망인은 2012. 11. 7.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K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K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99,859,040원을 E의 K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E은 그 무렵부터 2013. 4. 10.까지 위 돈을 모두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2) 망인은 2017. 10. 13.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J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J조합으로부터 99,778,699원¹⁾을 대출받아 이를 망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E은 망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무렵 위 돈을 모두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3) 망인은 2019. 10. 11.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 G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G조합로부터 99,882,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99,880,000원을 망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E은 망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무렵부터 2020. 6. 1.까지 위 돈을 모두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4)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2017. 10. 11. 당시의 시가가 500,127,100원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21. 1.경 시가가 366,666,666원²⁾이다.

(5)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은 280,529,270원(=279,223,197원+1,306,073원)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은 94,695,7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E에게 지급하여 E이 실질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돈 합계 399,517,739원(=199,859,040원+99,778,699원+99,880,000원)은 그 액수, 지급 시점, E의 채무상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E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E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491,568,796원(=500,127,100원+366,666,666원-280,529,270원-94,695,700원)과 E에 대한 생전 증여 가액을 모두 합산한 891,086,535원(=491,568,796원+399,517,739원)에 E의 법정상속분 2/9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 198,019,230원에서 E의 수증재산인 399,517,739원을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E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없게 되므로, E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원고를 비롯한 E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E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별지

부동산 목록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225㎡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와조 스라브층 평가건축대 90.11㎡

지하실 8.59㎡

세멘트벽조 스라브층 평가건 부속건물 0.99㎡

3.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철근콘크리트조 벽식조 평슬래브지붕 20층 아파트 동

1층 1057.76㎡, 1층 내지 4층 각 1044.56㎡, 5층 내지 20층 각 1036.40㎡, 지층

987.24㎡(대피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86646.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5층 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146.2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86646.4분의 51.901 끝.

1) 망인은 2017. 10. 13. J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J조합으로부터 99,778,699원을 대출받는 외에 주식회사 K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상당까지도 대출받아 이를 주식회사 K에 변제한 후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인다.

2) $366,666,666\text{원} = (445,000,000\text{원} + 355,000,000\text{원} + 300,000,000\text{원}) \times 1/3$,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버림